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개 발 제 한 구 역 의 지 정 및 관 리 에
관 한 특 별 조 치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19671호, 2023. 8. 1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·불량주택 신축 허용,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허용, 도로변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9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나.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
역 안에 위치한 가목의 시설(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진입로
설치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시장·
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제19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3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
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(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의 허용
하지 않으며, 바닥면적 5㎡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)을 설치하는 행
위

제40조제4항제2호 중 “법 제25조제2항”을 “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제25
조제4항”으로, “연장 또는 분할납부”를 “연장, 분할납부 허가 또는 몰납”
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
2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
3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
4.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
5.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

⑪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0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 제1호바목가) 중 “제2조의2제4항”을 “제2조의2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아목나) 중 “같은 법 제4조제2호다목의 민간정원”을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·운영하는 정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“일반국도·지방도에 설치하는 제설시설”을 “국도·지방도 등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제설시설(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해당 도로관리청이 활용하기 위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다목에 라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5호라목에 라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5호라목2)나) 전단 중 “인접한”을 “해당

시설의 대지와 맞닿아 접한 토지 또는 폭 12m 미만의 도로, 구거, 소하천 등 소규모 선형시설로 분리된 토지(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해 추가적인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시설과 일체의 부지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와 인접한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5호아목라) 본문 중 “10년이상거주자,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·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·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”을 “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”로 한다.

라) 가) 후단, 다)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축한 주택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·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신축할 수 있다.

라) 나) 후단, 다)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·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신축할 수 있다.

별표 3에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7. 법률 제10926호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「건축법」에 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확인하여 고시한 건축물(토지의 형질변경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국방·군사시설 부지 내에서만 가능하며, 해당 시설의 전체 형질변경 면적 범위 내로 한정한다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토지매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 사무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승계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4조(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)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“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~ 8. (생략) 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. (생략) <u><신설></u> 나. (생략) 9의2. ~ 18. (생략) 제19조(신고의 대상)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	제14조(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안에 위치한 가목의 시설(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진입로 설치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 9의2. ~ 18.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신고의 대상) ----- -----

각 호와 같다. 1. ~ 7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8. ~ 13. (생 략) 제40조(권한의 위임) ① ~ ③ (생 략)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담금(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. 1. (생 략) 2.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	-----. 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 7의3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(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는 허용하지 않으며, 바닥면적 5㎡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)을 설치하는 행위 8. ~ 13. (현행과 같음) 제40조(권한의 위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제25	부담금의 납부기한 <u>연장 또는 분할납부</u> 허가 3.·4. (생 략) ⑤ ~ ⑨ (생 략) <u><신 설></u> 부담금의 납부기한 <u>연장 또는 분할납부</u> 허가 3.·4. (현행과 같음) ⑤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2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 3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4.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5.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⑪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0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
--	--	---

제41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. 1.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2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 3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4.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5.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③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분기별로 분기	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41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<삭제> <삭제>
--	--

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·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.	<삭제>
--	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45